

수원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18가단522498(본소), 2019가단501368(반소)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등 ·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

담당변호사 박승기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인

담당변호사 서기은

변론 종결2020. 6. 16.

판결 선고2020. 11.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중 푸쉬풀 콘센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1] 도면 표시 물건을 인도하고,
나.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2의 가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88,75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C기관의 D사업(금형제작지원)에 참가한 [별지 1] 도면 표시 '이더캣 케이스'(Ether Cat Case)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제작에 관하여 피고와 2016. 12. 7.자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물품개발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형 개발공급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금형 개발공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표1]

제1조(목적물)

본 계약에 의거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해야 할 물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상세 내역은 제작시방서 또는 제품 도면에 따른다.(VAT 별도)

1	제품설계	Case Front 외 4종	1SET	3,500,000	5일
2	금형제작	Case Front 외 4종	각 1SET	29,000,000	16. 12월 21일
TOTAL(VAT 별도)		32,500,000			

제2조(특약사항)

1.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도면 및 제작시방서에 의거 금형설계 LAYOUT 도면을 작업개시 전에 원고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가 없이는 제작시방서상의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별첨 제작시방서상의 내용에 대한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을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추가, 삭제 또는 변경된 금형을 원고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납품장소 및 납기)

1. 납품장소 : 피고 지정 장소 사출처: E
2. 납기 : 발주 후 14일

제4조(물품의 인도 및 검사)

1. 피고는 정해진 납기 내에 목적물을 인도 완료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검수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설치를 요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중 발생하는 재해사고에 대하여 피고는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을 모두 책임진다.

제6조(대금지불)

대금지급은

계약금(총액의 60%) 19,500,000원 : 계약 후 3일 내 현금지급(VAT 별도)

잔금(총액의 40%) 13,000,000원 : T2 승인 후 당월 말 현금지급(VAT 별도)

한다(단 잔금은 품질확인서 및 계산서 발행 후 원고의 대금지불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잔금지급은 원고가 시사출 및 본 제품을 생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는 잔금 지급 전 기구 설계도와 금형 설계도를 원고에게 인도한다.

제7조(소유권 이전 및 위험부담)

금형의 소유권은 원고의 검사를 마치고 합격품으로 이를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전된다. 단, 인수 전에 발생한 제품상의 결함, 고장, 훼손 등의 위험에 대한 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금형 개발공급계약상 대금 3,250만 원을 피고에게 전액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12. 20.경 피고가 이 사건 금형 개발공급계약에 따라 제작한 이 사건 금형에 관하여 C기관의 실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의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3. 7.경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별지 2] 도면 기재 화장대조명(일반형, 이하 '이 사건 화장대조명'이라 한다) 2만 개를 1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1) 원고는 2017. 3. 1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F에 납품할 이 사건 화장대조명에 관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물품공급 및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화장대조명 공급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2]

제1조(목적물)

본 계약에 의거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해야 할 물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상세 내역은 제작시방서 및 제품 도면에 따른다.(VAT 별도)

1	제품	화장대조명(일반형)	20,000	1,330,000,000	분할 발주서로 진행
	1,330,000,000				

제2조(특약사항)

1.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도면 및 제작시방서에 의거 LAYOUT 도면을 작업 개시 전에 원고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가 없이는 제작 시방서 상의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별첨 제작 시방서 상의 내용에 대한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을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추가, 삭제 또는 변경된 사양을 원고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피고는 원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고가 지정하는 공공기관의 시험검사표를 원고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도품(샘플) 및 관련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원고는 본 개발을 위한 개발비 54,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7.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할 제품명은 본건 계약 당시 확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본 계약서에 첨부된 도면 등에 의한다.

제3조(납품장소 및 납기)

1. 납품장소 : 제조처 피고 / 납품처 원고

2. 납기 : 설계 완료 후 30일

제6조(이행보증금 및 물품대금지불)

1) 개발비 지불

개발비 계약금 : 본 계약 후 3일 이내 27,000,000원(VAT 별도) 현금 지급

개발비 잔금 : 금형 제작 후 3일 이내 27,000,000원(VAT 별도) 현금 지급

잔금 지급은 원고가 본 제품을 생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지급하기로 한다.

2) 물품대금지불

계약금(1,000개 분할 발주서에 대해 50%) : 발주 후 5근무일 이내 현금 지급하고 잔금은 제품 납품 후 5근무일 이내 원고는 잔금(50%)을 지급한다.

제7조(소유권 이전 및 위험부담)

금형의 소유권은 원고의 검사를 마치고 합격품으로 이를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전된다. 단, 인수 전에 발생한 제품상의 결함, 고장, 훼손 등의 위험에 대한 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8조(하자보증)

피고는 최종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제2조 제4항의 품질보증기간(1년) 동안 그 성능 또는 하자를 보증하며, 보증기간 중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제작상의 결함으로 인한 일체의 하자는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하자 없는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최종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3년간 유상 A/S를 실시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피고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사전 최고 등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반복적인 불합격 판정을 받아 품질에 대한 신용을 상실했을 경우

2) 원고는 이 사건 화장대조명 공급개발계약상 개발비 5,400만 원을 피고에게 전액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원고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신고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8. 10. 원고, 피고에게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위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표 3]

□ ① 벽 매립형 콘센트, ② 가구 매립형 스윙 콘센트 및 ③ 푸쉬쿨 콘센트와 관련된 하도급법 위반 혐의의 경우, 피조사인 원고와 신고인 피고 사이의 하도급거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하도급법 제2조의 하도급거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바, "심사절차종료"함

□ ④ 이더켓 케이스 금형 및 ⑤ 화장대조명과 관련된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부당특약 혐의의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무혐의"함

○ 기술 유용 혐의

- 원고가 피고에게 디자인 자료를 요구한 사실과 원고가 피고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거래 내지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음

○ 하도급대금 미지급 혐의

- (④ 이더켓 케이스 금형) 원고가 이더켓 케이스 금형 설계 및 제작비용 3,25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목적물을 납품하지 아니한 바, 원고에게 추가적인 대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됨

- (⑤ 화장대 조명) 원고가 개발비 5,4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양 당사가 최종 납품 단가에 이견이 있어 제품 양산에 이르지 못하고 계약해지된 바, 원고에게 추가적인 대금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됨

○ 부당 특약 혐의

- 하도급법 제3조의4에 따른 부당특약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조건 중 어느 조항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로 원고가 하도급법 제3조의4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음

□ ⑤ 화장대 조명과 관련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위탁 취소 및 부당 반품 혐의의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무혐의"함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혐의

- 양 당사자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단가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단가를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다른 업체와 유사한 제품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해 계약의 견적금액과 이 사건 화장대조명 단가가 유사한 바, 이 사건 화장대조명 단가가 유사·동일한 목적물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단가보다 낮다고 단정짓기도 어려움

○ 부당 위탁취소 혐의

- 원고가 지속적으로 당초 계약서에 첨부된 도면에 따른 목적물 납품을 요청했음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원고가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해지에 신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원고가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고급형" 샘플 제작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음

○ 부당 반품 혐의

- 원고는 피고에게 샘플 검사 불합격 사실을 통보하였을 뿐이며, 그와 별도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을 반품한 사실이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9호증, 을 제1 내지 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형 인도 청구에 관하여

-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형

개발공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금형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더캐트 케이스'의 양산 및 납품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금형의 디자인 비용 등을 받지 않고 원고가 요구하는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는 이 사건 금형 개발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한 이후 원고는 위 약속과 달리 '이더캐트 케이스'의 양산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형 개발공급계약의 대금은 이 사건 금형 개발공급계약서상 대금 3,250만 원에 피고가 이 사건 금형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 9,085,000원(= 디자인 개발비 500만원 + 시사출 제작비 50만 원 + 금형 재제작비 240만 원 + 제경비 1,185,000원)을 더한 액수로 수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9,993,500원(= 위 9,085,000원 + 부가가치세 908,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7, 8, 28 내지 30, 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금형 개발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이더캐트 케이스 양산 및 납품을 약속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더캐트 케이스 양산 및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금형 개발공급계약의 대금을 이 사건 금형 개발공급계약서상 대금 3,250만 원에 피고가 이 사건 금형 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디자인 개발비 등 제반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수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속 내지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화장대조명 공급개발계약상 개발비 반환 청구에 관하여

1)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화장대조명 공급개발계약에 따라 제작한 이 사건 화장대조명 샘플상 ① SMPS(교류, 직류변환 전원장치)가 케이스에 고정되지 않았고, ② AC 전원선이 부싱(패킹)으로 알루미늄사출 케이스에 고정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화장대조명을 점등했을 때 광확산판 가장자리에 음영이 발생하는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 위 하자 중 ①번과 ②번의 하자는 KC안전기준에

위반되는 하자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의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장대조명 중 기구물만 납품하기로 계약이 변경되었고 인증 관련 업무는 원고가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하자의 개선을 거부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7. 10. 26. 'H'를 운영하는 I과 이 사건 화장대조명의 사출금형(컨트롤 4종 1세트)에 관하여 물품공급 및 개발계약(대금 3,416만 원)을, 주식회사 J와 이 사건 화장대조명의 알미늄 압출, 확산 압출, 고정 클립 프레스, 가스켓 금형비에 관하여 물품공급 및 개발계약(대금 709만 원)을 새로이 체결하고, I에게 2017. 11. 8. 15,030,400원, 2018. 1. 12. 15,030,400원, 주식회사 J에 2017. 11. 8. 4,679,400원, 2018. 6. 26. 7,515,2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화장대조명 공급개발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이 사건 소장 부분이 2018. 5.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대조명 공급개발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장대조명을 개발하여 이를 양산 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이 사건 화장대조명에 KC안전기준에 위반되는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하자의 개선을 거부함에 따라 이 사건 화장대조명 공급개발계약은 위와 같은 하자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장대조명 공급개발계약은 원고의 해제 통지로써 2018. 5. 30.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7. 6. 14.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장대조명 중 기구물만 납품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화장대조명에 관한 인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화장대조명의 하자는 원고가 비용절감을 위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4 내지 16, 25, 37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화장대조명 공급개발계약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장대조명 중 기구물만 개발 및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화장대조명에 발생한 하자가 피고가 개발한 이 사건 화장대조명의 설계를 원고가 임의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장대조명 공급개발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개발비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개발비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5. 3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특례법'이라 한다) 및 구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법정이율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특례법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내리는 현행 법정이율규정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청구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푸시풀(Push-Pull) 콘센트를 디자인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에게 4차례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피고가 개발한 푸시풀 콘센트 디자인 파일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6. 12. 21.경 소외 회사와 푸시풀 콘센트 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피고와의 사업 진행을 중단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K일자 피고가 개발한 푸시풀 콘센트 디자인을 L가 창작하였다면서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출원을 하였고, 위 디자인은 M일자 특허청의 디자인 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 원고의 위와 같은 디자인 무단 등록행위는 푸시풀 콘센트 디자인의 실제 창작자인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의 위 디자인 개발비용 상당액인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이더켓 케이스'의 양산 및 납품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금형의 디자인 비용 등을 받지 않고 원고가 요구하는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는 이 사건 금형 개발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한 이후 원고가 위 약속과 달리 '이더켓 케이스'의 양산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금형 제작을 위해

피고가 지출한 비용 합계 9,993,500원[= 9,085,000원(= 디자인 개발비 500만 원 + 시사출 제작비 50만 원 + 금형 재제작비 240만 원 + 제경비 1,185,000원) + 부가가치세 90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와 피고는 2017. 6. 14. 이 사건 화장대조명에 관하여 피고가 기구물만 납품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화장대조명의 하자는 원고가 비용절감을 위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화장대조명 공급개발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화장대조명 양산 및 납품에서 배제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화장대조명 양산 및 납품에서 배제된다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화장대조명 공급개발계약상 개발비를 피고의 견적금액에서 감액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4,576만 원[= 4,160만 원(= 피고가 제출한 견적서상 금액 9,560만 원 - 이 사건 화장대조명 공급개발계약상 개발비 5,400만 원) + 부가가치세 41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반소는 이 사건 본소청구 또는 그 방어방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반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견련관계)이 있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소청구와의 견련성이란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 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이란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의 항변 사유와 대상이나 발생 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푸시풀 콘센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 반소는 이 사건 본소청구의 법률관계(이 사건 금형 개발공급계약, 이 사건 화장대조명 공급개발계약)와는 전혀 별개의 푸시풀 콘센트 개발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본소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고 본소 청구원인과 대상이나 발생 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반소는 이 사건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금형 및 이 사건 화장대조명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본소는 이 사건 금형 개발공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금형의 인도청구와 이 사건 화장대조명 공급개발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이고, 피고의 이 부분 반소는 이 사건 금형 개발공급계약 관련 원고의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이 사건 화장대조명 공급개발계약의 일방적인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반소는 본소 청구와 발생 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본소와의 견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금형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금형 개발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이더켓 케이스 양산 및 납품을 약속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더켓 케이스 양산 및 납품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금형 개발공급계약상 대금을 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화장대조명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위 2.의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장대조명 공급개발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화장대조명 공급개발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화장대조명 공급개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9,56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장대조명 공급개발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가 위 견적서와 이 사건 화장대조명 공급개발계약상 대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피고의 반소청구 중 푸쉬풀 콘센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현희

별지